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54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등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및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은석의원안)	3

I.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5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27.
- (3) 회 부 일 : 2025. 2.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시정 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등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및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자료제출(제75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 판매·결제 대행·중개 등과 관련된 사업자는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제1항) <u><신 설></u>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현행과 같음) ○ <u>등록사업자는 국세청장등의 요구 시 사업장 소재지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의무 제출(제2항)</u>
☐ 과태료(제76조) ○ 국세청장등은 관련 <u>명세</u>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항)	☐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 ○ 국세청장등은 관련 <u>명세 및 증빙자료</u>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항)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최은석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43)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1)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

1) 「부가가치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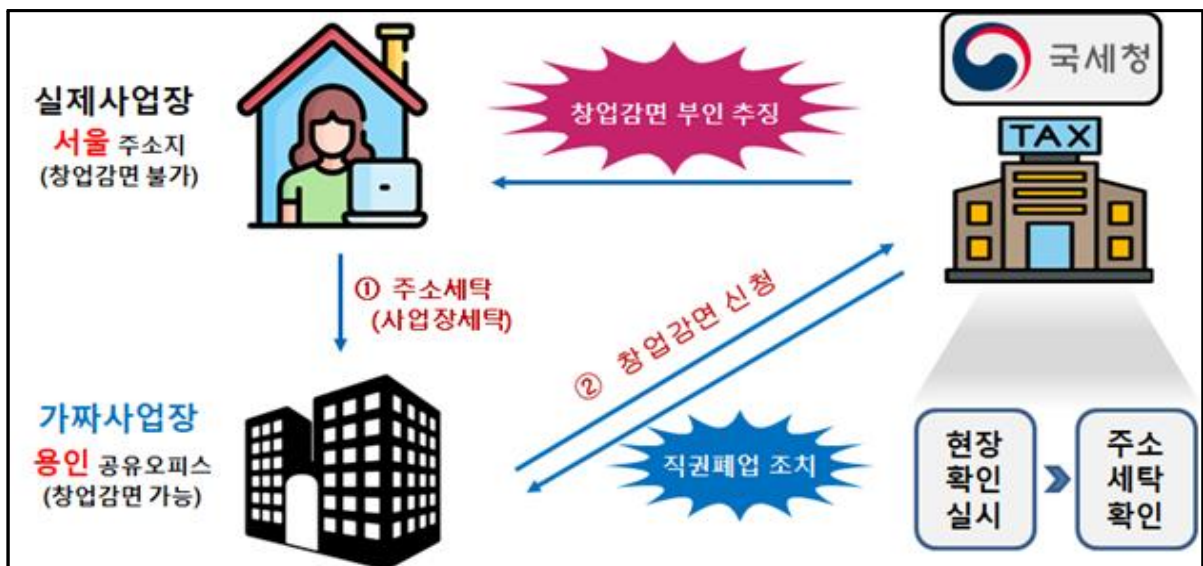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감면 특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실제로는 등록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²⁾

[세액감면 제도 악용 사례]



자료: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국세청 보도자료, 2024.11.7.)

특히,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음.

2) 개정안의 제안이유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 400평대의 한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소위 ‘국내 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되었음.³⁾

□ 이에 개정안은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①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② 국세청장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유령 사업자(페이퍼 컴퍼니)나 위장 사업자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세액감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세액감면으로 인한 세수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당한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형식상 외관만 갖춘 허위 사업자에 대해서도, 실제로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세액감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이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은 직권으로 사업자의 실 사업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사무공간 없이 우편물 수령 장소로만 이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여부, 사업 영위 장소 등에 대해 소명 요청하고 그에 따라 등록 말소 등 조치하고 있음.(허위 사업자등록자에 대한 사후 조치 관련 국세청 답변자료)

면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⁴⁾

둘째,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세청이 사업장의 실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조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개정안이 감면받은 소득세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와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한 사업자에게만 세액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에 대한 입증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데 행정적 부담이 클 수 있고, 공유오피스나 재택근무와 같이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력 사용량 등 전통적인 기준에 따른 일률적인 사업운영 증빙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질적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거래계약서, 종업원 현황자료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자 별로 거래 현황, 사업 영위 방법,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증빙서류 종류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적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있고, 일부 제도를 악용하는 납세자를 선별하기 위해 일반 납세자들에게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종류가 구체화되지 않아 추후 납세자-과세관청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47